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내규

제정 : 20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계수준의 융복합 연구를 지향하는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단국대학교 BT-특성화 캠퍼스 (천안캠퍼스)에 둔다.

제3조(전공분야)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세계수준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5개의 전공 (분자의과학전공, 재생의과학전공, 융합생명정보과학전공, 바이오테크놀로지전공, 조직재생공학전공)을 개설한다. 세부전공의 폐지 및 신설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적용) 본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내규의 시행 범위 및 세부 사항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조직

제5조(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세부 세칙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연구 및 운영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각 연구팀 간 또는 지원 부서간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연구사업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주임교수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⑧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1명

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장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의 주임교수를 겸임하여 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학사 업무의 총괄 및 관리 감독
 - 나. 소속 전임 교원 및 초빙교원의 인사, 지도 관리 감독
 - 다. 그 밖의 교육부장관 및 우리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항
-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부서) ①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 1. 글로벌 재생의과학 전문 교육업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나노바이오의과학과 글로벌융합 교육부(이하 “교육부” 라 한다)를 둔다.
- 2. 글로벌 재생의과학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노바이오의과학과 글로벌융합 연구부(이하 “연구부” 라 한다)를 둔다.
- 3. 해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노바이오의과학과 국제교류부(이하 “국제부” 라 한다)를 둔다.
- 4. 지역 기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산학협력부(이하 “산학부” 라 한다)를 둔다.
- 5. 학과 전반의 업무지원을 위해 교학연구지원부를 두며, 행정부서장, 팀장, 직원, 계약직

원, 조교,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 및 각 항목과 같다

1. 교육부

가. 대학원 나노바이오키과학과의 BT, NT, IT, MT 및 융합연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소관 교육의 장·단기 교육목표 설정 및 계획 입안

다. 교육업무의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라. 재생의과학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제반 사항

마. 해외교류기관과의 공동학위제에 관한 제반 사항

바. 그 밖의 위 각 목과 관련한 사항

2. 연구부

가. BT, NT, IT, MT 및 융합연계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수행된 연구결과의 보고서 작성,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라. 재생의과학 글로벌 연구프로그램에 관한 제반 사항

마. 해외교류기관과의 공동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

바. 그 밖의 위 각 목과 관련한 사항

3. 국제교류부

가. 해외학자체류 및 강의조율

나. 해외 통합석박사 학위 프로그램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홍보 및 입학 관리 업무

라. 그 밖의 학생 해외 파견 및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항

4. 산학협력부

가. 글로벌 프로그램의 운영

나. 참여 산업체 및 유관 기관 정비 및 관리

다. 산학공동연구 추진, 운영 및 관리

라. 공동기기장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마. 그 밖의 위 각 목과 관련한 사항

5. 교학연구지원부

가. 사업계획, 재정예에 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나. 대학원과정 운영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다. 글로벌융합 교육부와 연구부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라. 실험재료, 실습물품, 공동연구 기기 구매 및 관리

마. 연구 성과물 관리(지식재산권, 연구논문 등), 특허정보 수집 및 제공

바.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 보고, 제반 규정의 검토 및 개정

- 사. 글로벌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
 - 아. 외국인 학생의 입학 및 학사 관리를 위한 외국학생 특별전담팀의 운영
 - 자. 해외교류기관의 외국인 초빙교원의 체류, 강좌,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해외초빙교원 특별전담팀의 운영
 - 차. 산학협력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
 - 카. 공동기기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제반 행정지원
 - 타. 그 밖의 위 각 항목과 관련한 사항

제3장 학사

제9조(입학) 본 학과의 입학에 관한 기준 정원 및 자격, 선발 등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단, 세부기준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본 학과에 입학하고자하는 학생은 세계수준의 융복합 연구에 맞는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여야 하며, 수학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2단계에 걸친 입학시험 및 심층면접의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1. 1단계 (입학시험 및 서류 평가) : 60%

- 전공필기시험 (20%): 5개 전공 분야 중 3개 전공필기점수를 반영한다.
- 영어 성적 (20%): 공인영어성적(TEPS 또는 TOEFL(CBT, IBT, PBT)성적만 인정한다. 단, 공인 영어 성적이 없을 시 단국대 공인 영어평가 pass도 인정한다.
- 서류평가 (20%): 학사과정성적, 자기소개서, 연구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2단계 (심층 면접) : 40%

-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면접위원회에서 1단계 전형을 통과한 응시자에 대해 전공 및 자질에 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 심층면접에 참여하는 면접위원은 각각의 세부전공의 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한다.
- 심층면접은 논문 발표평가와 일반심층면접으로 구성 된다.
- 논문발표평가 : 수험생에게 관련분야 논문을 주어진 시간 동안 읽고 발표하도록 한다.
- 일반심층평가 : 대학원생으로의 기본 인성 및 자질, 전공분야에 대한 도전성과 창의력, 학부전공 지식, 입학 지원시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충실도를 평가한다.

② 우리대학교 나노바이오의과학 전공 학부 과정 재학 중인 자 중,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8조 6항에 의거한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등록된 경우 우선 입학자격을 준다.

제10조(교육트랙)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 진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트랙에 따라 학업의 이수 및 졸업요건을 달리한다.

- ① 글로벌 연구자 트랙 : 졸업 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낼 수 있는 인재 양성
- ② 산업체 리더 트랙 (글로벌 리더 트랙) : 졸업 후 지역 산업체에서 핵심기술 개발의 주역이 될 전문인력 양성

제11조(복수학위제)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대학원 학칙 제5조, 제30조에 의거하여 국내외 타 대학 대학원 간 학점 교류 및 복수학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① 대상 국내외 대학교 및 학점 인정범위는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소 2년간은 우리대학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에서 학점이수해야 하며, 최소 1년간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이수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복수박사학위 운영위원회) 복수학위과정의 운영 및 논문지도, 학위 수여 결정 등의 세부사항은 복수박사학위 운영위원회를 두어 결정한다. 복수박사학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학교의 대학원 주임교수가, 위원으로는 우리대학교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2인, 상대 대학교 2인, 외부인사 1인으로 구성한다.
- ④ 복수학위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졸업요건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다.

제12조(공동지도교수제)

- ①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대학원 학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교내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단, 목적에 따라 해외 석학의 경우 초빙교원인 경우에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학점의 이수)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 및 재학 관련 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의거한다. 단, 세부기준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① 대학원 학칙 제23조에 준하여 석사과정 이수 학점은 33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 학점은 78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18학점 포함), 박사과정 이수 학점은 45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으로 한다.
- ②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을 통해 진학한 경우 취득해야할 학점은 30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9학점 포함)으로 할 수 있다.
- ③ 전공지도에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와 나노바이오의과학과 학과주임교수의 지도하에 타 과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전공 워크숍 및 특강: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교수들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외 우수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교원인사규정 제6장에 의거하여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며, 정규학기 이외에 다양한 전공의 워크숍 및 특강 영어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 ② 박사연구 집중 프로그램: 박사학위 과정 학생들의 영어 발표 능력 및 논문 작성 능력의 향상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
- ③ Short Coursework: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제15조(논문지도) 석박사 학위 논문에 관한 제반 내용은 대학원 학칙 제8장에 의거한다. 단, 박사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학생별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 체계적인 박사학위수여를 위해 학생별 박사학위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한다.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은 5인 (내부 3인, 외부 2인)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의견을 받아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박사학위논문지도위원회에서는 박사학위논문 계획서의 검토, 지속적인 연구지도, 심사 기준 설정, 최종 심사를 담당한다. 또한 조기졸업 및 조기학위 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 심사절차) 박사학위논문은 아래와 같은 단계별 심의를 거쳐 심사한다.

1. 예비심사 : proposal 절차에 따라 졸업 2개 학기 전 논문초안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2. 본 심사 : defense 절차에 따라 졸업 1개 학기 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졸업여부를 결정하여 4등급을 부여한다.

A:pass (통과), B:minor revision (한달 후 재심), C:major revision (한학기 후 재심), D:reject (1년 후 재심)

단, C 및 D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장학금 및 기타 특전이 유보될 수 있다.

③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 심사 전에 지정된 공개장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청구 논문의 발표자는 공개발표 2주 전까지 학위청구논문의 개요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의 발표는 나노바이오의학과 주임교수가 발표일정 및 장소를 결정하여 발표자에게 통고하고, 지도교수 및 논문지도(심사)위원이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석사 및 박사 학위 논문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석박통합과정의 지속) 석박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수료 후 박사과정의 지속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에 따라 박사과정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는 석사과정 졸업 요건에 의거하여 졸업할 수 있다.

제17조(학위논문제출자격) 졸업 및 학위논문제출자격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8장에 의거하며,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세부 요건 및 예외 사항은 대학원 나노바

이오의과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외국인학생 입학 및 관리규정)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의 외국인학생의 입학 및 관리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지원부내 외국인학생 특별전담팀에서 담당한다. 세부 시행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장 교원

제19조(우수교원 확보노력)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를 영입하기 위해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의 연구실적의 주기적인 스크리닝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교원 특별채용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특별채용을 총장에게 건의 한다.

제20조(교원평가)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전임교원의 업적 평가는 세계수준의 연구역량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과 내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에 건의한다. 별도의 평가기준 및 평가대상, 인정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21조(사업)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별도의 사업단 및 연구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1. BK21 플러스 사업
2. 기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3. 세포응용연구, 생체재료연구, 재활임상의학 분야의 우수한 교수 및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나노바이오의과학의 연구내용에 맞는 BT, NT, IT, MT의 융합기술인 재생의과학의 융합기술 개발
4. BT, IT, NT, MT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융합의생명과학기술 인력 양성
5. 사업단을 통하여 유관 분야 전문가와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연구를 활성화
6. 국제 연구협력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과 제공으로 각 소주제별로 필요한 BT-NT-IT-MT 융합기술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동물모델 및 재활 임상 의학에 응용할 수 있는 제품 및 기술의 확보
7. 그 밖의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연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2조(재정) ①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1.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지원금
2. 우리 대학교의 연구사업 대응자금 및 연구지원금
3. 기업, 국영기업체, 공익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및 용역수익금

②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국고지원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지원금 및 수익금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3조(예산·결산) ①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는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6장 사업단 및 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

제24조(설립)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소속 전임교원이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대형과제를 수주하였을 경우 사업의 원활한 운영등의 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총장의 명에 따라 별도의 사업단 및 연구센터를 설립 할 수 있다.

제25조(조직) 사업단 및 센터의 장은 과제 책임자가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과제 참여 교수로 구성되며, 자문 및 평가위원회 위원은 외부인사들로 구성, 사업단장 및 센터장이 선임할 수 있다. 자문 및 평가위원회 위원 중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 중 회장의 추천으로 1인 이상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제26조(지원) 사업단 및 센터의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우리 대학교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에 진학할 경우, 제18조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특전 내용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제27조(해산) 사업단 및 센터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해산을 신청하며, 대학의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산할 수 있다.

제28조(비밀유지의무) 사업단 및 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사업단 및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의 연구사업 관리운영 규정예 따른다. 다만, 연구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 및 센터의 장이 정한다.

부칙(2003.9.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2의 졸업기준은 2015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조직도



[별표 2]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졸업자격요건 충족확인서

졸업자격요건 확인표

항목	석사	박사		충족여부 (O, X)	비고
		GLEX	Glocal		
이수학점	33학점	박사 45학점/통합 78학점			
논문심사 요건	- 신청시기 : 졸업예상일로부터 약 한 학기 전(매년 3월, 9월 중)	- 신청시기 : 졸업예상일로부터 약 1년 전(매년 3월, 9월 중) - 예비+본심사(1,2차 실시) - 영어논문작성 - 해외학자 1인 논문심사 참여 장려	- 신청시기 : 졸업예상일로부터 약 1년 전(매년 3월, 9월 중) - 예비+본심사(1,2차 실시) - 영어논문작성 - 기업체 연구소장급 이상 1인 논문심사 참여 장려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역량요건	SCI(SCIE)급 1편(주저자)	1. SCI(SCIE)급 주저자 논문이 IF 합 100이상이어야 함 2. 분야별 상위 10% 1편 또는 IF 5이상 1편의 주저자 논문이 포함되어야 함	1. SCI(SCIE)급 주저자 논문 1편 2. 산학협력 관련 결과물 (국내특허 3편 출원 또는 해외특허 1편 출원 또는 기술이전 1건/기업공동연구 또는 시제품 개발)		1과 2는 모두 충족해야함
		1. 국제학술대회 영어발표 1건과 국내학술대회 발표 3건 2. 국제학술대회 영어발표 3건 * 모두 주발표자에 한해 인정함	1. 국내학술대회 발표 3건 * 모두 주발표자에 한해 인정함		1과 2 중 한 개의 항목만 충족하면 됨
	종합학력시험(본교실시) 단, SCI급 논문 submit, under revision, or accept (1저자)에 한해 면제	종합학력시험(본교실시) 단, SCI급 논문게재 (1저자)에 한해 면제			
	외국어시험(본교실시) 내국인학생 : 영어 외국인학생 : 영어, 한국어 택 1				

[별표 2]

- * 증빙자료 : 1) 성적증명서(수강과목 및 이수학점 확인용)
2) 사유서(자유양식-과목 미개설의 경우 사유서 제출 불필요) 및 증빙자료
3) 역량 요건 관련 서류
 가. 논문-최소 submission 관련 서류
 나. 학술발표-발표논문을 확인할 수 있는 리스트 및 초록
 다. 특허-출원서, 기술이전-기술이전계약서, 기업공동연구, 시제품출시 -관련 증빙자료
 라. 취업예정관련 서류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졸업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졸업심사를 신청합니다.

2018년 〇〇월 〇〇일

홍길동 (사인)